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1. 主要 法的根據

◎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
(총 정원의 책정)

- 제1항 :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“총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 별로 책정한다.
- 제2항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정원 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2.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위생매립장 관리소 및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지적기구 인력이 경기도 자치 12200-2769('96. 9. 9)호 및 경기도 자치 12200-2770('96. 9. 9)호로 승인됨에 따라 시 본청의 정원 333명에서 332명으로 사업소 53명을 64명으로 읍·면·동 309명에서 310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